2022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고

2022. 07. 25.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512,847	3,385,245	127,602	3.8%
	일반회계	502,710	441,766	60,944	13.8%
	경상적세외수입	60,110	110	60,000	54,545.5%
	임시적세외수입	3,366	3,366	_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	21	ı	_
	국고보조금등	438,269	438,269	-	_
	보전수입등	944	_	944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2,980,923	2,915,478	65,445	2.2%
	경상적세외수입	445,326	445,326	-	
	임시적세외수입	17,135	17,135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11	511	_	
	국고보조금등	905,007	932,613	△27,606	△3.0%
	지방채	70,000	280,000	△210,000	△75.0%
	보전수입등	280,156	124,241	155,915	125.5%
	내부거래	1,262,788	1,115,652	147,136	13.2%
학교	1용지부담금특별회계	29,214	28,001	1,213	4.3%
	경상적세외수입	80	80	_	_
	임시적세외수입	3,871	3,871	_	_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789	23,789	_	_
	보전수입등	1,213	_	1,213	순증
	내부거래	262	262	_	_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240,377	4,023,944	216,433	5.4%
	행정운영경비	3,998	3,998	_	_
	재무활동	1,431,751	1,204,413	227,338	18.9%
	사 업 비	2,802,096	2,813,038	△10,942	△0.4%
	예비비	2,531	2,495	36	1.4%
	일반회계	1,352,739	1,204,534	148,205	12.3%
	행정운영경비	786	786	_	-
	재무활동	683,230	534,092	149,138	27.9%
	사 업 비	668,723	669,656	△933	△0.1%
	주택사업특별회계	2,852,149	2,787,704	64,445	2.3%
	행정운영경비	3,212	3,212	_	_
	재무활동	722,321	645,321	77,000	11.9%
	사 업 비	2,124,161	2,136,739	△12,578	△0.6%
	예비비	2,455	2,432	23	0.9%
	도시개발특별회계	8,270	5,700	2,570	45.1%
	사 업 비	8,270	5,700	2,570	45.1%
학교	고용지부담금특별회계	27,219	26,006	1,213	4.7%
	재무활동	26,200	25,000	1,200	4.8%
	사 업 비	943	943	-	_
	예비비	76	63	13	20.6%

Ⅱ.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배당금수입	SH공사 '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금	60,000	-	60,000	순증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주거급여)	941	-	941	순증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지역건축안전센터〉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3	순증			
	기금	국민계정 국비 감추경에 따른 세입 감액	730,870	753,632	△22,762	△3.0%		
주택사업특별회계 〈 주택정책 과〉	모집공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시업 일부를 지체재원 시업으로 변경	-	50,000	△50,000	순감		
	기타회계전입금	지방채 발행시업 일부를 지체제원 시업으로 변경함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	237,378	127,378	110,000	86.4%		
	기금	도정계정 국비 감추경에 따른 세입 감액	130,124	134,968	△4,843	△3.6%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정비과〉	모집공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사업 일부를 지체재원 사업으로 변경	70,000	230,000	△160,000	△69.6%		
(1/10-1-1/	순세계잉여금	'21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반영	243,332	97,695	145,637	249.1%		
	기타회계전입금	'21회계연도 결산 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금 반영	219,441	200,873	18,568	9.2%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반영	15,844	5,567	10,277	184.6%		
《사업시스쪽 바정자》	기타회계전입금	'21회계연도 결산 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금 반영	219,441	200,873	18,568	9.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공동주택지원과〉	순세계잉여금	'21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반영	1,213	_	1,213	순증		
	세입예산 추경요구액							

Ⅲ.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히게	세부사업	<u> </u>	ネプカル (/ O l)	기저에서	조기에	조기르
회계	세구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연내 집행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	30	△30	순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하반기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	2,147	1,904	243	12.8%
일반회계 〈주택정책과〉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990	2,990	△2,000	△66.9%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2,000	-	2,000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국민계정)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	237,378	127,378	110,000	86.4%
	*청년 매입임대 사업	유형변경(신혼 I →청년) 에 따른 예산 증액	(×275,175) 396,025	(×239,085) 344,085	(×36,090) 51,940	15.1%
	*신 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유형변경(신혼 I →청년) 에 따른 예산 감액	(×184,913) 218,692	(×220,575) 279,081	(×△35,663) △60,389	△21.6%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 규모 확대(2만명→3만명)	65,109	53,109	12,000	22.6%
	예비비(국민)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	984	1,011	△27	△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	45,000	-	45,000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전략사업과〉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사업 공모결과 규모 및 대상지 확대로 타당성조사 필요	4,483	4,083	400	9.8%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공급과〉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청년주택 입주자 주거비 추가 지원	80,712	69,209	11,503	16.6%
주택사업특별회계	* 공공 주택 건설 (추가8만호)	국비 신청시기 미도래에 따른 감추경	(×20,512) 87,768	(×43,711) 110,958	(×△23,190) △23,190	△20.9%
〈공공주택과〉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국비 신청시기 미도래에 따른 감추경	(×4,193) 4,193	(×9,036) 9,036	(×4,843) △4,843	△53.6%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수절차 이행	36	-	36	순증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	76	63	13	20.6%
글 시기 〈공동주택지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	26,200	25,000	1,200	4.8%
일반회계 〈주거정비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정)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	219,441	200,873	18,568	9.2%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도정)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	954	949	5	0.5%
〈주거정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	336,800	333,600	3,200	1.0%
일반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촉)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	219,441	200,873	18,568	9.2%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재촉)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	517	473	45	9.5%
〈재정비촉진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재촉)	결산에 따른 회계정리	258,700	229,900	28,800	12.5%
일반회계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하반기 안전점검 수당 확보를 위한 증액	54	36	18	50.0%
〈지역건축안전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사업 '21년 국비 반납	3	-	3	다 이것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공간기획과〉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대행사업비 정산을 위한 증액	8,270	5,700	2,570	45.1%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기부채납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한 증액	325	175	150	85.7%
일반회계 〈도시공간기획과〉	*서울도시건축비엔 날레	도시건축비엔날레 임시 전시물 조기설치를 위한 증액	1,258	958	300	31.3%
	*시민 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		845	495	350	70.7%
	세출	예산 추경요구액			216,433	

Ⅳ. 검토의견

1) 총괄

- 주택정책실 소관 `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76억 2백만원(3.8%)이 증액된 3조 5,128억 4천7백만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64억 3천3백만원(5.4%) 증액된 4조 2,403억 7천7백만원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609억 4천4백만원(13.8%)이 증추경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54억 4천5백만원(2.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12억 1천3백만원(4.3%)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1,482억 5백만원(12.3%),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44억 4천5백만원(2.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25억 7천만원(45.1%),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2억 1천3백만원(4.7%) 증추경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기정 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계	3,385,245	3,512,847	127,602	3.8%
шоп	일반회계	441,766	502,710	60,944	13.8%
세입	주택사업특별회계	2,915,478	2,980,923	65,445	2.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8,001	29,214	1,213	4.3%
	총계	4,023,944	4,240,377	216,433	5.4%
	일반회계	1,204,534	1,352,739	148,205	12.3%
세출	주택사업특별회계	2,787,704	2,852,149	64,445	2.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700	8,270	2,570	45.1%
	도시개발특별회계	26,006	27,219	1,213	4.7%

2)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원은 배당금 수입.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임.

- "배당금 수입"은 600억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SH공사 `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금1)이며,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억 4천4백만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기금)" 276억 5백만원 감액은 국비 감추경에 따른 세입감액을 반영한 것이며, "모집공채" 2,100억원 감액은 당초의 지방채 발행사업²) 중 일부를 '21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활용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임. 이 밖에 "기타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은 '21년 결산에 따른 회계 정리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증추경한 것임.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조정 내역〉

		세입		세출	·
주택사업특별회계		65,445		65,445	
기정예산	추경(안)	◦기금	△27,605	∘ 청년 매입임대 사업	51,941
		(512,4	$107 \to 484,802$	(344	1,085 → 396,026)
		-청년 매입임대 사업	36,090	◦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60,389
2,915,478	2,980,923	(239,0	$0.085 \rightarrow 275,175)$	(279	$9,081 \rightarrow 218,692)$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35,662	∘ 청년월세 지원	12,000
		(220,5	575 → 184,913)	(5	53,109 → 65,109)

^{1) 2021} 회계연도: 2022. 5. 12. 자로 서울시 결산 승인, 배당금 지급날짜 2022. 6. 13. 해당 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서울시로부터 배당요구액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 의를 통해 지급.

[○] 이익잉여금 처리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공사 회계규정 제163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

②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③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④ 시 일반회계 납입(배당)

⑤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²⁾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500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600억원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23,190	•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설 추진 400
		(43	,711 → 20,521)	(4	1,083 → 4,483)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4,843	∘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11,503
		($9,036 \rightarrow 4,193)$	(69,	209 → 80,712)
		∘ 모집공채	△210,000	∘ 공공주택건설(추가 8만호)	△23,190
			$(210,000 \to 0)$	(110,	958 → 87,768)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50,000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4,843
			$(50,000 \to 0)$	(9	9,036 → 4,193)
		-재개발 임대주택 대입	△160,000	·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	기선 사업
			$(160,000 \to 0)$		△1,000
		∘ 순계잉여금	155,915	(4	1,931 → 3,931)
			$262 \rightarrow 259,177)$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숙	'리 등 융자
		│ ∘ 기타회계전입금 │	147,135		2,000
			$124 \rightarrow 676,259)$	(2	$2,100 \to 4,100$
		-일반회계전입금(국민) (107)	·	· 예비비	23
		,	$378 \rightarrow 237,378$	(2	$2,432 \rightarrow 2,455)$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 전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77,000
		(401,	746 → 438,881)	(563,5	$00 \rightarrow 640,500)$
학교용지부담		1,213		1,213	
기정예산	추경(안)	∘ 순계잉여금	1,213	· 예비비	13
			$(0 \to 1,213)$		(63 → 76)
28,001	29,21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200
, , , , ,	,			(25,	000 → 26,200)

3) 세출예산안

(1) 총괄

- 세출예산 추경은 총 2,164억 3천3백만원 증액되었음.
- 그러나, `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2,253억 7천2백만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89억 3천9백만원 감추경되었음.
- 이는 13개 사업에 815억 1천3백만원이 증액(국비 360억 9천만원, 시비

454억 2천3백만원)되었음에도 5개 사업에서 904억 5천2백만원(국비 636억 9천6백만원, 시비 267억 5천6백만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임.

(`22년 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 회계별 사업별 증액 및 감액 요구액〉

■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2억	43백만 원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0억	원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18백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3백만 원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1억	50백만 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3억	원	
시민 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	3억	50백만 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	요구액	
청년 매입임대 사업	519억	40백만 원	
청년 월세 지원	120억	원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4억	원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115억	3백만 원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36백만 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	요구액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25억	70백만 원	
■ 일반회계	추경.	요구액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Δ	30백만 원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 20억	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	요구액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603억	89백만 원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231억	90백만 원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 48억	43백만 원	

(2)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유 재산인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입점업주³)를 대상으로 월 임대 료⁴)와 관리비⁵)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임.
 - '20년부터 추진되어 온 이 사업은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본예산 19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공기업담당관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⁶)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억 4천3백만원을 증추경하였음.

회 계	세부사업	예산과 목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주택정책과〉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하반기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	2,147	1,904	243	12.8%

- `22년 7월 현재, SH공사의 상반기 집행실적은 847개소, 10억 6천만 원임. 추경예산안은 지원 감면율 하향조정(40~60%→30~40%)과 상반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하반기 감면 예상액을 산정한 것으로 이해됨. 이 예산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SH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선 집행한 이후에 시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해 12월, 지원 예산 부족분 8억 7천만원을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 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H공사의 손실분을 예비비로 충당한 전례가 있

³⁾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입접업주

^{4) &#}x27;22.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호전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감면율 하향조정 (40~60% → 30~40%)(「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6차)」, 공기업담당관-24018. '22.7.15.)

⁵⁾ 공용관리비 중 경비 · 청소인건비

⁶⁾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6차)(공기업담당관-24018(2022.7.15.))

⁻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율 하향 조정

는 만큼,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추경안이 적정한 추계 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최근 3년간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추진실적〉

연도	추진실적
2020년도	○ 1차 지원 : 965개소, 15억 5천만원 ○ 2차 지원 : 897개소, 6억 9천만원
2021년도	○ 3차 지원 : 978개소, 13억원 ○ 4차 지원 : 1,029개소, 13억 7천만원
2022년도	○ 5차 지원 : 847개소, 10억 6천만원 ○ 6차 지원 :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추진 중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은 서울지역 쪽방·고시원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긴급임시주택 지원, 보증 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재정착 지원 등 주거상향을 도모하는 사업임.
-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은 작년 말 본예산 편성 당시 의원 발의사업으로 예결위에서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증금 지원 20억원, 이 사비 및 생필품 지원 등에 9천9백만 원 지원을 목표로 총 20억 9천9 백만원을 편성하였음7).

(단위: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990	2,990	△2,000	△66.9%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2,000	_	2,000	순증

- 추경안은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긴급 임 시주택으로 이주시킬 경우, 보증금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자금의 회

⁷⁾ 가구당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보증금 100만원, 이사비 20만원, 생필품지원 30만원을 계획중임.

수가 가능한 "**융자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일반회계로 편성된 보증금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이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려는 것임.

- 보증금을 직접 지원할 경우 임대주택 등의 제공과 보증금 지원이라는 이 중 혜택과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을 고려함은 물론 융자전환 시사업 대상 확대로 지속적·보편적 주거복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이해됨.
- 다만, 유사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8)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증금(50만원) 직접지원방식(국비·시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토부 지원대상과의 형평성문제 제기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음.
- "청년 매입임대 사업",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은 양호한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임. 당초 계획되어 있던 '신혼부부' 주택용 매입 물량 일부(참 317호)를 '청년' 유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두 사업간 국비 지원 및 시비 출자 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회 계	세부사업	세부사업 증감사유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청년 매입임대 사업	유형변경(신혼 I →청년) 에 따른 예산 증액	(×275,175) 396,025	(×239,085) 344,085	(×36,090) 51,940	15.1%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유형변경(신혼 I →청년) 에 따른 예산 감액	(×184,913) 218,692	(×220,575) 279,081	(×△35,663) △60,389	△21.6%

⁸⁾ 한시사업('20~22년)으로 향후 사업 지속여부는 미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호당 실매입비 적용표(`22년도)〉

		호당	`22년 공급량(호)			
구 분 ⁹⁾	국고지원단가 (`21년 기준)	실매입단가 (`22년 현실화)	출자금편성액 (`22년 본예산 요구)	당초	변경	증감*
청년	253백만원	353백만원	50백만원 (100백만원*1/2)	2,100	2,417	317
신혼부부 I	250백만원	406백만원	78백만원 (156백만원*1/2)	750	433	△317
신혼부부II	454백만원	453백만원	0원	1,000	1,000	-

- 두 사업의 실적을 보면, `22년 목표 대비 신혼 I 유형의 약정체결 실적은 저조한 반면, 청년유형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데10), 이는 감정평가 시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제곱미터(m²)당 단가가 높아 사업성 측면에서 신혼 I (전용 36m²이상)이 청년(전용 26m²이상)보다 불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11).
- `20~`22년 입주자 모집 경쟁률 역시 청년 유형이 신혼 I 유형보다 높 게 나타나고 있음.

(`20~`22년 입주자 경쟁률)

구 분	합 계	일 반 (원룸포함)	청 년	신혼ㅣ	신혼Ⅱ
경 쟁 률	3.5:1	2.6:1	17.4:1	0.6:1	0.6:1
모집호수	15,723	8,138	1,865	4,920	900
접수인원	55,464	21,123	30,710	3,119	512

9) 공급대상

- 청년(대학생, 대학·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19세~39세
-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를 둔 한부모가족, 혼인가족

대상별	입주자격
청년	<1순위>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등, <2순위> 본인과 가족 소득 100%이하(자산기준 있음),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자산기준 있음)
신혼부부 I	월평균소득 70%이하(맞벌이 90%) 자산기준제한, 최장20년 (최초 2년, 2년씩 재계약)
신혼부부Ⅱ	월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120%) 자산기준제한, 최장6년, 자녀출산시 최장 10년 (최초 2년, 2년씩 재계약)

¹⁰⁾ 심의통과 건수: 청년은 2,100호 목표 중 547건(26%)이며, 신혼 I 은 750호 목표 중 20건(3%)에 불과함 11) '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급계획 - 유형별 물량조정 검토(주택정책과-25772, '22.7.7.)

- 신혼부부 유형의 실적 저조와 함께 청년유형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유형별 공급물량의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 사료됨12). 다만, 신혼부부는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주택 등)를 선호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13)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해 보임.
- 한편, SH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물건 목록 4,273건을 분석한 결과, 물건의 위치는 권역별로는 서남권(1,840건, 43%), 동북권(1,141건, 27%), 동남권(975건, 23%) 순으로, 자치구별로는 서남권에 위치한 금천구(671 건)와 구로구(511건) 순으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일부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청년의 주거접근성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물건 목록(출처: 서울시 자료, 전문위원실 분석)〉

권역/자치구	청년	혼합형(청년+신혼)	총합계
도심권	29	89	118
종로구	10	77	87
중구	19	12	31
동남권	954	21	975
강남구	108		108
강동구	415	20	435
서초구	209		209
송파구	222	1	223
동북권	1,080	61	1,141
강북구	87		87
광진구	42		42
도봉구	22	13	35
동대문구	374		374

¹²⁾ 신혼 II 는 정부지정매입가격이 매입예정가보다 높아 서울시와 SH 부담(각각 50%)이 없으나, 신혼 II 를 청년으로 유형변경할 경우 청년유형 공급을 위한 시비와 SH 부담분 증액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외한 것으로 이해됨.

¹³⁾ 사유: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1조에 따라 신혼 I 의 경우 소득수준(월평균소득 70%이하)과 자산기준(3.25억원 이하)이 높고, 신혼부부는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주택 등)를 선호하는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음.('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급계획 - 유형별 물량조정 검토(주택정책과-25772, '22.7.7.))

성동구	377	48	425
성북구 중랑구	117 61		117 61
ᆼᆼᆡ 서남권	1,470	370	1,840
관악구	145		145
구로구	511		511
금천구	482	189	671
동작구	12		12
양천구	103		103
영등포구	217	181	398
서북권	129	70	199
마포구	32		32
서대문구	29	6	35
은평구	68	64	132
합계	3,662	611	4,273

○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 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은 당초 선정자 규모(2만 명)보다 1만 명을 추가 확대하고자 120억원을 증액하는 것임.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전너 원세 시원	청년월세 지원 규모 확대(2만명→3만명)	65,109	53,109	12,000	22.6%

-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이며,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생애 1회, 최대 10개월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지난해('21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약 8만여명이 신청하였으며 구간 별¹⁴⁾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2만 7천명을 최종 선정하였음. 청년층 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임대료 직접지원에 따른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한 주거시장의 임대료 상승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무작위 전산 추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1년도 청년 월세 지원 선정내역〉

그ㅂ		최종 선정				심사결과 '통과'					심사
구분	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탈락
계	27,000	9,580	9,920	4,500	3,000	65,836	14,112	23,033	14,689	14,002	21,292
상반기	5,000	2,500	2,000	500		26,897	7,032	12,106	7,759		8,824
하반기	22,000	7,080	7,920	4,000	3,000	38,939	7,080	10,927	6,930	14,002	12,468

※ 탈락사유 : 소득기준 12,986명, 기타(서류미흡, 서울시 미거주 등) 8,396명

○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은 서울시내 저이용되거나 방치 된 민간소유 토지¹⁵⁾를 활용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장기전세주택 (일명 '상생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¹⁶).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전략사업과〉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사업 공모결과 규모 및 대상지 확대로 타당성조사 필요	4,483	4,083	400	9.8%

- 상생주택 공모 결과('22.6.), 제출된 22개소 가운데 최종 10개소가 선 정되었으며¹⁷⁾, 이 중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임.
- 당초 서울시는 '22년부터 '26년까지 상생주택 3,120호 공급에 총 사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000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4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	산하여 70만원	2,00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은	2.5% 적용	

¹⁵⁾ 부지면적 3,000제곱미터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가능 토지

¹⁶⁾ 사업방식: 민간토지사용형, 공동출자형, 민간공공협력형(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22.3.) '민간토지사용형'은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사용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하여 운영하는 유형임.

¹⁷⁾ 제출된 지역 중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보전 및 전문 기능 필요한 지역은 제외

비 약 2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시범사업의 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음.

- 대상지별 사업계획, 사업성 분석 등 협상안 마련, 타당성 조사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에 필요한 기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지별 공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음.

- (현재 예산) : 총사업비 287억원(시범사업 70호, '21.10.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

※ 투자심사 대상:「지방재정법」제37조

- (市투자심사)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중앙투자심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 선행 필요
- (시법사업) : 중앙투자심사 대상 규모로 추진이 예상됨

구 분		강서구	은평구	송파구	강남구
용도	변경전	자연녹지	3종일반	1종일반	자연녹지
지역	변경후	2종일반	J 등 본 긴	3종일반	3종일반
공급예상·	규모(전용59㎡)	242 호	93 호	1,047 호	69 호
총사업비(억원)		992 억원	381 억원	4,293 억원 (리츠설립 검토)	283 억원
중앙투자심사 해당		0	0	0	X

〈연도별 사업목표(민간토지사용형)〉

(단위: 호. 백만 원)

구 분	계	'22	'23	'24	'25	'26
공급호수(호)	3,120	70	762	762	763	763
예산(백만원)	295,545	3,978	74,834	72,181	72,276	72,276

※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전략사업과-22388, `22.6.3.)

-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처럼 중앙투자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을 건의하여 향후 추진되는 사업 의 기간 단축을 통해 임대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¹⁸).

○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세부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19)을 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 공급 과〉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청년주택 입주자 주거비 추가 지원	80,712	69,209	11,503	16.6%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절차

① 신청		②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③ 주택계약		④ 대출금 지급
신청서 및 서류제출 (인터넷)	•	서류심사	•	임치주택계약	•	암차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지원신청자		SH		지원신청자		SH

- `22년 5월 말까지, 1,519호에 468억 6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에 318호²⁰)를 추가 지원하고자 보증금 지원예산 115억 3백만

²⁰⁾ 지원물량 산출근거

단지명	민간임대(호)	신청율	지원세대(호)	지원물량(호)
영등포구 당산동 OO	409	61.4%	251	210
서대문구 남가좌동 00	109	61.4%	67	318

¹⁸⁾ 현재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0호) 제3조제2항제11호가목에 따라 투자심사면제가 가능한 대상임. o 과련법령(투자심사면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0호) 제3조제2항제11호

^{11.}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1525호) → 행정안전부장관 위임을 받은 재정정책과장 회의 참여

¹⁹⁾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통계목	기존 주거비 예산	추가 주거비 예산(안)
공기관등에대한	69,158,000천원	11,502,951천원
지본적위탁사업비	= 평균보증금액(32,640,389원)	= 평균보증금액(36,172,800원)(대행수수료 0.48%반영)
	x 지원물량(2,119호)	x 지원물량(318호)

-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주거급여 등 각종 주거비 지원사업마다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이 각각 달리 적용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청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매년 서울의 임대료 수준이 상승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립·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목표한 사업대상지가 감소(18개→13개 사업)
 함에 따라 국비 지원금 231억 9천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단위: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주택 건설	국비 신청시기	(×20,512)	(×43,711)	(×△23,190)	△20.9%
〈공공주택과〉	(추가8만호)	미도래에 따른 감추경	87,768	110,958	△23,190	△20.370

- 주요 사유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장지,강일,영등포), 공공주택 품질개선(증산), 정책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금천경찰서)으로 인해 국비 신청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추경대상 세부사업별 감액 사유 및 향후일정〉

세부사업명	감액 사유	향후 일정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사업	궁중수택 품실양상을 위한 사업계획 면정 건투로 이하 창고지여	- '22.8.~ 공유재산심의 재상정 추진 - '23.3.~7. 공사발주 및 입찰공고 - '23.10. 공사 착공

세부사업명	감액 사유	향후 일정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실시, 공공주택사업계획변경 검토 등에 의	- '22.7.~ 차고지TF 운영 및 보완용역 실시 - '23.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3.12. 공사 착공('26.12. 준공예정)
강일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 보완용역 실시, 공공주택사업계획변경 검토 등에 의 한 사업계획 승인 지연	
금천경찰서 공공주택건립사업	도서관 건립 관련, 관계부서 의견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	- '22.12. 설계공모 공고 - '23.1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4.8. 공사 착공('27. 준공예정)
영등포 공공주택지구사업 (영등포 쪽방)	공공주택지구지정권자인 국토부의 지구계 획 승인절차 미이행으로 후속 절차인 사업 계획승인 절차 순연 등	- '22.10.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국토부) - '23.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4.4. 공사착공('26.12. 준공예정)

- '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국비 미신청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불용액의 규모가 298 억 7천5백만원 발생(불용률 40.9%)하였고, 당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이번 추경에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내년도 예산편성시 이 사업의 공정률과 예산 항목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추계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는 서울시가 매입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서울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매입주택을 청년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원은 전액 국비보조금이며 이중 48억 4천3백만원을 공정지연의 사유로 감액하려는 것임.

(단위: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개발 매입임대형	국비 신청시기	(×4,193)	(×9,036)	(×4,843)	△53.6%
〈공공주택과〉	리츠	미도래에 따른 감추경	4,193	9,036	△4,843	∆ევ.0%

- 지연사유는 인근주민의 민원(미아3), 분양가 상한제 개편기대에 따른 일 반분양 지연(홍은13), 조합 내 갈등에 따른 계약지연(장위4, 삼선5)으로, 지난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재개발임대주택 공정지연에 따른 일부지역 국고보조금 미신청으로 예산 60억 6백만원(불용률 24.3%)을 불용한 점을 감안할 때, 집행기관은 민원 중재, 갈등 조정 등 공정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파트 행정절차 이행비용"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폐지21)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 절차 중 (재)열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3천 6백만원을 증추경한 것임.

(단위: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수절차 이행	36	-	36	구 이것

- 14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과 아파트지구 폐지계획(안)은 지난 5월 마련되었으며(행정2부시장 보고완료). 14개 중 2개 지구(원효.

^{21) &#}x27;70년대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舊「도시계획법」에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舊「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해 왔으나, 이후 '99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시·도조례로 위임되면서 2000년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03년 이후 관련 법령에서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주택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14개 아파트지구가 운용되고 있음.



※ 출처: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수립' 용역보고서(2014년), p.28

청담·도곡)는 행정절차를 완료22)하였고, 나머지 12개 지구23)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열람4회, 재열람12회) 결정 및 용도지구 폐지(열람1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이 미편성되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규모 주거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문공고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아파트지구 폐지 및 지구단 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 아파트지구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행계획²⁴⁾이 2017년 4월에 수립되어 이미 14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2021년 마런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러 추 경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함.
-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은 노후 건축물, 주택사면(옹벽·축대), 건축공사 장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는데 필요한 수당 1천8백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단위: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지역건축안전센터〉		하반기 안전점검 수당 확보를 위한 증액	54	36	18	50.0%

- 이 사업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로 추진되어 왔으나, `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의 발생으로 당시 서울시내 민간건축공사장 일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예산을 조기에 소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추석, 겨울철 등 하반기 안전점검 예산이 부족하여 불

²²⁾ 원효('22.1월 결정고시), 청담도곡('21.12월 재열람)

^{23) &#}x27;22년 하반기 : 지구단위계획결정 행정절차 이행

^{- 4}개 지구(여의도, 잠실, 이촌, 화곡) - 열람공고/재열람 각 1회(8회)

^{- 8}개 지구(압구정, 반포, 서초, 이수, 서빙고, 암사명일, 가락, 아시아선수촌) - 재열람 각1회(8회)

²⁴⁾ 아파트지구 도시관리체계 개선 시행계획(도시관리과-4031, 2017.4.7.)

가피하게 증액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됨.

〈안전점검 결과 및 예산집행 현황〉

연번	점검명	기간	점검개소	점검결과	참여전문가(명)	수당지급액(천원)
계		1,942		108	35,940	
1	겨울철 안전점검	'21.11.15.~12.17.	506	187개소 513건 조치	19	7,920
2	위험건축물 안전점검	'21.11.10.~12.10. '22.2.16.~2.21.	83	19개동 후속조치	9	7,155
3	광주사고 긴급점검	'22.1.14 ~ 1.21.	305	168개소 519건 조치	18	10,140
4	해빙기 안전점검	'22.3.2.~3.25.	527	162개소 540건 조치	31	10,725 (국비 2,985)
5	풍수해 안전점검	'22.5.15. ~ 6.15.	521	결과 수합중	31	미지급 (약 9,000)

[※] 국비 집행 별도 (1,500만원 중 298.5만원 집행)

○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은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건축기획 수립 예산 1억 5천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음.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사업 세부 운영기준('22.3.)'에 따르면 '건축기획25)' 은 운영부서(관리청)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부서 요청 시 공공 건축지원센터가 수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회 :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호 〈도시공간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기부채납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한 증액	325	175	150	85.7%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23년 9월 개최예정인 제4회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를 조기에 홍보하고 개최예정지인 송현동 부지에 체험형 전시 시설을 조기설치(시스템 비계 임대설치 필요)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3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음. 최근 송현동 부지 개방에 맞추어 `23년 4월 설치, 5월 운영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²6), 준비기간이 약 10개월 정도27)

²⁵⁾ 건축기획: 모든 공공건축사업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선정, 발주방식 및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전략 수립

소요됨을 감안할 때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져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됨.

(단위: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도시공간기획과〉	서울도시건축비엔날 레	도시건축비엔날레 임시 전시물 조기설치를 위한 증액	1,258	958	300	31.3%

- 지난 행사에 대한 평가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내실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추후 행사개최 준비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와 계속적인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겠음.
- "시민 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은 무미건조한 공공공간28)을 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조성하는 사업임. 상반기 시민공모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모 수상작 중 대상지를 선정한 후 자치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설계 및 공사비 3억 5천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음.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자치구 시범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1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구 분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비고
계	845	495	350	
사무관리비	5	5	1	
시설비	830	490	340	
감리비	7	0	7	
시설부대비	3	0	3	

²⁶⁾ 당초계획은 '23년 8월 설치, 9월 운영, 송현동 내 비엔날레 파빌레온 내년 봄 조기 설치(시장요청사항, '22.5.11.)

²⁷⁾ 전시계획(2개월), 인허가(1개월), 발주·계약(2개월), 주문제작·설치(5개월) → 10개월 소요(예상)

²⁸⁾ 가로, 녹지, 광장,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등

- 종합하면, 주택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및 공급 확대 를 위한 증추경, 공공임대주택공급과 관련한 사업지연 등의 사유에 따 른 감추경은 불가피하다 하겠음. 다만,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등의 사업은 소극적 행정과 사 전 예측 미흡 등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음. 또한, 민간임대주택 공 급활성화(미집행률 67.1%),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미집행률 65.4%)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 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예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됨.
- 마지막으로, 민선8기를 맞이하여 최초 편성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함에도 제311회임시회 개최일(7월 15일)의 불과 이틀 전인 7월 13일에 제출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을 초래하여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는 바, 향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29)에서 정하는회기시작 15일전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할 것임.

담 당 자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지현
연 락 처	02-2180-8216
이 메일	cjh1786@seoul.go.kr

^{29)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

붙임

주택정책실 추경사업 예산집행 현황(`22.7.20.기준)

(단위 : 천원)

	I		I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미집행률
3	^두 택정책실	총합계	882,706,187	413,374,094	412,788,889	469,917,299	53.2%
주택정책과	불법전매	합계	30,000	_	_	30,000	100.0%
	신고포상금 지급	기타보상금 (301-12)	30,000	_	_	30,000	100.0%
	공공재산 임차	합계	1,903,575	-	-	1,903,575	100.0%
주택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09-01)	1,903,575	_	_	1,903,575	100.0%
	서울형	합계	2,990,000	-	-	2,990,000	100.0%
주택정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 (308-11)	2,990,000	-	_	2,990,000	100.0%
		합계	344,085,000	172,042,500	172,042,500	172,042,500	50.0%
주택정책과	청년 매입임대 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 금 (404-01)	239,085,000	119,542,500	119,542,500	119,542,500	50.0%
		출자금 (502-01)	105,0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0.0%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합계	279,080,500	139,541,168	139,541,168	139,539,332	5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5,500	3,668	3,668	1,832	33.3%
주택정책과		공사 · 공단자본전출금 (404-01)	220,575,000	110,287,500	110,287,500	110,287,500	50.0%
		출자금 (502-01)	58,500,000	29,250,000	29,250,000	29,250,000	50.0%
	청년 월세 지원	합계	53,109,045	26,233,090	26,238,360	26,870,685	50.6%
		사무관리비 (201-01)	130,000	35,900	35,900	94,100	72.4%
주택정책과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52,400,000	25,623,342	25,628,612	26,771,388	51.1%
十型6 型		민간위탁금 (307-05)	81,000	75,803	75,803	5,197	6.4%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 (308-11)	498,045	498,045	498,045	_	0.0%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합계	4,083,492	15,835	15,835	4,067,657	99.6%
		사무관리비 (201-01)	95,000	10,000	10,000	85,000	89.5%
전략사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0,000	5,835	5,835	4,165	41.7%
		출자금 (502-01)	3,978,492	-	-	3,978,492	100%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합계	69,208,700	69,160,300	69,160,300	48,400	0.1%
즈태고그기		사무관리비 (201-01)	50,700	2,300	2,300	48,400	95.5%
주택공급과 		공기 만등에다.한자 본적위탁사업비 (403-02)	69,158,000	69,158,000	69,158,000	-	0.0%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미집행률
공공주택과		합계	111,743,956	1,607,720	1,607,720	110,136,236	98.6%
		사무관리비 (201-01)	30,000	10,000	10,000	20,000	66.7%
		시설비 (401-01)	1,554,396	806,220	806,220	748,176	48.1%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감리비 (401-02)	354,647	-	_	354,647	100.0%
		시설부대비 (401-03)	6,000	-	_	6,000	100.0%
		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 (403-02)	92,277,179	-	-	92,277,179	100.0%
		공사 • 공단자본전 출금 (404-01)	12,621,734	791,500	791,500	11,830,234	93.7%
		출자금 (502-01)	4,900,000	-	_	4,900,000	100.0%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합계	9,035,839	3,442,606	3,442,606	5,593,233	61.9%
공공주 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 전재원) (402-02)	9,035,839	3,442,606	3,442,606	5,593,233	61.9%
 지역건축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합계	36,000	35,940	35,940	60	0.2%
안전센터		기타보상금 (301-12)	36,000	35,940	35,940	60	0.2%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합계	247,480	235,549	172,749	74,732	42.6%
도시공간		사무관리비 (201-01)	175,400	163,549	100,749	74,652	42.6%
기획과		공무원 교육여비 (201-01) 전산개발비	80	-	-	80	100.0%
		(207-02)	72,000	72,000	72,000	-	0.0%
		합계	957,600	661,050	361,400	596,200	62.3%
도시공간	서울도시건축비 엔날레	사무관리비 (201-01)	352,600	110,050	110,050	242,550	68.8%
기획과		공공운영비 (201-02)	30,000	29,100	-	30,000	100.0%
		행사운영비 (201-03)	575,000	521,900	251,350	323,650	56.3%
도시공간 기획과	시민	합계	495,000	398,336	170,311	324,689	65.6%
	생활공간(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사무관리비 (201-01)	5,000	4,986	4,986	14	0.3%
	및 시범사업	시설비 (401-01)	490,000	393,350	165,325	324,675	66.3%
	돈의문	합계	5,700,000			5,700,000	100.0%
도시공간 기획과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공기관등에대한자본 적위탁사업비 (403-02)	5,700,000	-	-	5,700,000	100.0%